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년 12월 일

제출자 : 광진구청장

의안  
번호

42

### ① 개정이유

시·도의 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② 주요골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신설 - 제2조의2)

### ③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세정 13400-1153('98. 11. 19)호 : 승인공문 참조

### ④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u></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li> <li>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li> <li>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li> <li>4. 이륜자동차</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 의 담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
  - 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
  - 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담해 자
  - 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 자동차.

관인생략

## 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종로구 태평로 1가 31번지 (본관 구연금 매점 3층) / 전화 (02) 731-6257 / 전송 731-6956 세무행정과 과장 위정복 담당사무관 권오도 담당자 최한철

문서번호 세정 13400-1153

시행일자 1998. 11. 19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통보

16.8.6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73('98.11.12)호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기에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첨부 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결 세무행정과장 위정복

수신처 : 서구 1-25

## 행정자치부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전화(02)3703-5010 /전송3703-5552

세제과 과장 김 대 영

사무관 최 성 광

담당자 임 우 택

문서번호 세제13400-273

시행일자 1998. 11. 12.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 제목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통보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특별·광역시)  
구)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을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고
- 대전 세정13415-864호(98.9.16) 및 서울 중구 세이13410-241호(98.  
10.27)에 의한 면허세감면조례 허가신청은 본건으로 가름합니다.

붙임 ○○도(특별시·광역시 ○○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 행정자치부장관

전결 지방세제심의관 권강웅

받는곳 나01~07,10~18

## ○○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다음에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지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신 설>	<p>제 00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 자동차</p>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자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업 무 연 락

수신 각구청 구세감면조례개정 담당자

제목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례개정(안) 수정

1. 세정 13400-1153('98.11.19)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중 일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통보하니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100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준의 면제대상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준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